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204호, 2025. 12. 16. 공포, 2026. 6. 17., 2026. 12.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안전시설물 지원·점검의 세부 규정 및 화재공제 지원대상 확대

- 1) 시장 내 안전시설물 설치·보수 등 사업 지원 시 상인 및 상인회의 의견청취 방법 규정(안 제9조)
- 2) 안전시설물 점검 시 조사사항 추가(안 제9조의2)
- 3) 화재공제 지원 범위 확대에 따른 명칭 변경(안 제9조의3 등)

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 1) 가맹점 등록의 매출액 한도 설정 및 산정방법 규정, 등록제한업종 추가 및 제한업종 판단기준 명시(안 제9조의16, 별표1)
- 2) 가맹점 등록갱신 신청기간 명확화(안 제9조의17)
- 3)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가맹점 정보 및 공개방법 규정(안 제9조의18)

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처분

- 1) 부정유통에 따른 지원중단 기간 및 가맹점 등록 취소 후 재등록 제한
기간 기준 강화·신설(안 제9조의20, 별표1의3)
- 2) 과징금 산정을 위한 부당이득금 정의, 과징금 부과기준·부과절차
및 분할납부 규정(안 제9조의23, 별표2)
- 3) 신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액 규정(별표3)

라. 온누리상품권 관련 기타 사항

- 1)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권면금액 정의, 발행권면 최고한도 규정(안
제9조의14)
- 2) 판매대행자의 제출항목 및 제출주기 규정(안 제9조의24)
- 3) 법률에 신설된 업무 수행을 위한 위임 권한 및 위탁 업무 추가
(안 제33조의2, 제34조)
- 4) 온누리상품권 업무 수행을 위해 위임·위탁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권한 부여(안 제34조의2)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전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6. 4. 23. ~ 5. 8.) 추진 예정
- 3) 행정규제 : 별첨 참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0조제1항”을 각각 “법 제2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20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란 회의, 면담 또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말한다.

제9조의2제2항제5호 중 “법 제20조의2제2항”을 “법 제20조의2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8항) 중 “법 제20조의2제3항”을 “법 제20조의2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중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법 제20조의2제2항”을 “법 제20조의2제4항”으로 한다.

⑥ 법 제20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보조한 안전시설물의 관리책임

자 지정 여부 및 관리 현황

2. 화재, 풍수해 등 관련 공제 또는 보험 가입 여부

제9조의3제1항 중 “따른 전통시장”을 “따른”으로,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을 ““화재공제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따른 전통시장”을 “따른”으로, “거쳐 전통시장”을 “거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을 각각 “화재공제사업”으로 한다.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전통시장 화재공제”를 각각 “화재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때에는 그 지원금을 공단에 지급해야 한다”를 “때에 공단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급받으려면 전통시장”을 “지급받으려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따른 전통시장”을 “따른”으로 한다.

제9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전통시장 화재공제”를 각각 “화재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한 전통시장”을 “화재공제에 가입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로 한다.

제9조의6의 제목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을 “(화재공제의 가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통시장 화재공제”를 “화재공제”로, “전통시장에서”를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전통시장 화재공제”를 각각 “화재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전통시장 활성화”를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

점가의 활성화”로, “경우 전통시장”을 “경우”로, “등 전통시장”을 “등”으로 한다.

제9조의7 본문 중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한 전통시장”을 “화재공제에 가입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로, “화재가”를 “화재, 붕괴, 폭발 등이”로, “재산상”을 “생명·신체나 재산상”으로 한다.

제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통시장 화재공제의”를 “화재공제의”로, “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위원회”를 “화재공제 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등 전통시장”을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전통시장 화재공제”를 각각 “화재공제”로 한다.

제9조의13제1항 중 “거처 전통시장”을 “거처”로 한다.

제9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소비자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판매대행자가 운영하는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등을 통해 1회에 구매하는 금액(금액의 범위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

-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제9조의16의 제목 “(등록 제한업종과 그 예외)”를 “(등록 제한과 그 예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종전의 제2항) 중 “법 제26조의4제3항”을 “법 제26조의4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한업종의 해당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1.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
2. 매입액·매출액의 품목별 비중
3. 매장의 진열 상태
4. 점포명 또는 상호명

③ 법 제26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억원을 말한다.

⑥ 법 제26조의4제5항에 따른 매출액 및 온누리상품권 환전금액의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출액: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매출액
2. 온누리상품권 환전금액: 다음 각 목 중 금액이 더 큰 방법

가. 해당 점포가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당해연도에 환전한 금액의
합계

나. 해당 점포가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직전연도에 환전한 금액의
합계

제9조의17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26조의4제6항”을 “법 제26조의4제10항”으로, “1

개월 전까지”를 “전 3개월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내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 제26조의6제4항제4호에 따라 해당 가맹점을 말소한다.

제9조의18부터 제9조의21까지를 각각 제9조의19부터 제9조의22까지로 하고, 제9조의1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18(가맹점 등록 현황의 공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6조의4제11항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현황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온누리상품권 관련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온누리상품권 관련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 현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맹점의 소재지
2. 가맹점명
3. 가맹등록 일자
4. 가맹점 등록 유형

제9조의20(중전의 제9조의19)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6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1년
2. 법 제26조의6제1항제2호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6개월

3. 법 제26조의6제1항제3호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법 제26조의5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
우: 6개월

나. 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가목·나목을 위반하여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3년

다. 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다목을 위반하여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6개월

라. 법 제26조의5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
우: 6개월

마. 법 제26조의5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
우: 5년

바. 법 제26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6개
월

사. 법 제26조의5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
우: 1년

아. 법 제26조의5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
우: 3년

자. 법 제26조의5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
우: 1년

제9조의23부터 제9조의2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9조의23(과징금의 부과) ① 법 제26조의9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이란 개별가맹점이 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가목, 나목 또는 제4호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위반행위를 통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한 금액의 합계에 해당 온누리상품권을 법 제26조의10에 따른 판매대행자로부터 구매한 당시에 적용된 할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른 자료 또는 조사 등을 통해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합산한다.
- ③ 법 제26조의9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부과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과징금 부과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따른 통지를 포함한다)하여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과징금의 수납 사실을 지체 없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연기하는 경우에는 원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6회(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를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의24(판매대행자의 제출사항) ① 법 제26조의10제3항에 따라 판매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발행업무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온누리상품권의 판매량(권종별, 판매방식별 구분)
2. 온누리상품권의 재고량(권종별 구분)
3. 온누리상품권의 회수량(환전량)
4. 판매대금 정산 내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발행업무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관리, 법 제26조의8에 따른 유통실태조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발행업무수탁기관의 장은 판매대행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판매대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의25(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6조의12제1항에 따라 보고나 자료 제출 명령을 할 때는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기한·방법 및 내용 등을 보고자 또는 자료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6조의12제1항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 또는 공단 직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검사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대상에게 검사 시작 7일 전까지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미리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알리지 않을 수 있다.

제33조의2제3호 중 “법 제74조제1항”을 “법 제26조의9”로, “과태료”를 “과징금”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26조의12에 따른 위반행위의 조사
5. 법 제74조제1항, 제2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34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70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제34조의2제1항제2호 중 “등록”을 “등록, 등록갱신 및 등록정보 변경”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취소”를 “취소 및 말소”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26조의12에 따른 위반행위의 조사
5. 법 제70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제35조 중 “별표 2와”를 “별표 3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3 제목 중 “(제9조의19제1항 관련)”을 “(제9조의20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1의3 제1호가목 전단 중 “3년간”을 “5년간”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후단 중 “경우 그 처분이 지원중단 12개월 인 경우에는 경고로 감경할 수 있고, 지원중단 12개월을 넘는 경우에는”을 “경우”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별기준

가. 개별가맹점의 지원중단 기준

- 1) 법 제26조의5제1항제1호 위반: 지원중단 6개월
- 2) 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가목 위반: 지원중단 3년
- 3) 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나목 위반: 지원중단 3년
- 4) 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다목 위반: 지원중단 6개월
- 5) 법 제26조의5제1항제3호 위반: 지원중단 6개월
- 6) 법 제26조의5제1항제4호 위반: 지원중단 5년
- 7) 법 제26조의5제2항 위반: 지원중단 6개월

나. 환전대행가맹점의 지원중단 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법 제26조의5제3항제1호 위반	법 제26조의6 제1항	지원중단 1년	지원중단 2년	지원중단 3년
법 제26조의5제3항제2호 위반		지원중단 1년	지원중단 3년	지원중단 5년
법 제26조의5제3항제3호 위반		지원중단 1년	지원중단 2년	지원중단 3년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하고, 같은 표(중전의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다목을 위반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한 점포 외에서 거래하여 수취 한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요청한 개별가맹점 1) 1차 위반 2) 2차 위반 3) 3차 이상 위반	법 제74조제1 항제1호	300 500 1,000
나. 법 제26조의5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수취 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자에게 물품 판매 또 는 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경우 1) 1차 위반 2) 2차 위반 3) 3차 이상 위반	법 제74조제1 항제2호	50 100 200
다. 법 제26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온누리상품 권 환전을 대행한 환전대행가맹점 1) 환전대행가맹점이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온누리상품권 환전을 대행한 경우 가) 1차 위반 나) 2차 위반 다) 3차 이상 위반 2) 환전대행가맹점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 의 제공 없이 수취하였거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 임을 인지하고 환전을 대행한 경우	법 제74조제1 항제3호	500 1,000 2,000

가) 1차 위반		1,000
나) 2차 위반		1,500
다) 3차 이상 위반		2,000
3) 환전대행가맹점이 환전대행한도를 초과하여 온누리상품권 환전을 대행한 경우		
가) 1차 위반		500
나) 2차 위반		1,000
다) 3차 이상 위반		2,000
라. 법 제26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자	법 제74조제1항제4호	
1) 1차 위반		10
2) 2차 위반		50
3) 3차 위반		100
4) 4차 위반		1,000
5) 5차 이상 위반		2,000
마. 법 제2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중소기업부장관 또는 발행업무수탁기관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온누리상품권 보관·판매·회수·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한 자	법 제74조제1항제5호	
1) 1차 위반		1,000
2) 2차 위반		1,500
3) 3차 이상 위반		2,000
바.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 개설신고를 한 경우	법 제74조제2항제1호	
1) 1차 위반		100

2) 2차 위반		300
3) 3차 이상 위반		500
사. 법 제26조의5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온누리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개별가맹점	법 제74조제2항제2호	
1) 1차 위반		10
2) 2차 위반		20
3) 3차 이상 위반		30
아. 법 제26조의12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74조제2항제3호	
1) 경과일수 10일 이내		10
2) 경과일수 10일 초과 20일 이내		20
3) 경과일수 20일 초과 30일 이내		30
4) 경과일수 30일 초과 60일 이내		50
5) 경과일수 60일 초과 100일 이내		80
6) 경과일수 100일 초과 200일 이내		100
7) 경과일수 200일 초과 365일 이내		200
8) 경과일수 365일 초과		300
자. 법 제26조의12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74조제2항제3호	
		300
차. 법 제69조제2항 각 호의 사람(시장·군수·구청장은 제외한다)이 같은 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법 제74조제2항제4호	
1) 경과일수 10일 이내		10
2) 경과일수 10일 초과 20일 이내		20
3) 경과일수 20일 초과 30일 이내		30
4) 경과일수 30일 초과 60일 이내		50
5) 경과일수 60일 초과 100일 이내		80
6) 경과일수 100일 초과 200일 이내		100
7) 경과일수 200일 초과 365일 이내		200

8) 경과일수 365일 초과		300
카. 법 제69조제2항 각 호의 사람(시장·군수·구청장은 제외한다)이 같은 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법 제74조제2항제4호	300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중단·가맹점 등록 불가·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원중단, 가맹점 등록 불가,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9조의2제2항, 별표1의3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등록 제한업종에 대한 적용례)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가맹점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등록 제한업종(제9조의16제1항 관련)

표준산업분류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
46107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331	주류 도매업
46463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6492	귀금속 도매업
46722	귀금속광물 도매업
47231	주류 소매업
4764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59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전자상거래 소매업
47993	다단계 방문판매
5621	주점업
58122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개발 및 공급업
63999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711	법무관련 서비스업
712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531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731	수의업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7639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8462	연금업
855	일반교습학원
86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221, 91222, 91229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612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96999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별표 2]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9조의23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징금은 부당이득금에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태양 및 수단, 위반행위의 효과, 위반행위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미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고, 각 중대성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은 다음과 같다.

- 1) 경미한 위반행위: 1.5배
- 2) 중대한 위반행위: 2배
- 3)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3배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의9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1) 가중사유

- 가) 과거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100분의 30 이내
- 나) 위반행위를 은폐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 다)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100분의 10 이내

2) 감경사유

- 가) 위반행위를 자진 신고하고 부당이득금을 자진 반환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
 - 나) 조사 과정에서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적극 협조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 다) 위반행위 인지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이행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 라)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00분의 10 이내
 - 마)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00분의 10 이내
-

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반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고 다목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 납부로 인해 단순히 자금 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 1) 위반자의 지급불능·지급정지 또는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중대성 구분	판단기준	부과 기준율
가. 법 제26조의5제1항 제2호가목 위반(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수취한 온누리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	법 제26조의9제1항	경미한 위반행위	부당이득금 5백만원 미만, 위반 기간 3개월 이내 등	1.5배
		중대한 위반행위	부당이득금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위반 기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등	2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부당이득금 2천만원 이상, 위반 기간 6개월 초과 등	3배
나. 법 제26조의5제1항 제2호나목 위반(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온누리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	법 제26조의9제1항	경미한 위반행위	부당이득금 5백만원 미만, 실제 매출 대비 초과 환전 비율 20% 이내 등	1.5배
		중대한 위반행위	부당이득금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실제 매출 대비 초과 환전 비율 50% 이내 등	2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부당이득금 2천만원 이상, 실제 매출 대비 초과	3배

		위반행위	환전 비율 50% 초과 등	
다. 법 제26조의5제1항 제4호 위반(제3자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유통·사용하는 경우)	법 제26조의9제1항	경미한 위반행위	부당이득금 5백만원 미만, 공모범위 제한적 등	1.5배
		중대한 위반행위	부당이득금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다수의 제3자와 공모 등	2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부당이득금 2천만원 이상, 조직적 환전 네트워크 확인 등	3배

비고

1. 하나의 가맹점이 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가목, 나목 및 같은 항 제4호 중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별로 과징금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다만, 합산한 금액이 법 제26조의9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의 3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2. 각 위반행위로 인한 부당이득금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3.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 제2호 표의 판단기준이 상이한 경우 중대성이 높은 기준으로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 ① <u>법 제20조제1항</u> 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라 승인·고시된 시장정비구역에 포함된 시장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 내의 상업기반시설은 제외한다.	제9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 ① <u>법 제20조제2항</u> ----- ----- ----- ----- -----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u>법 제20조제1항</u> 에 따라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때에는 지원예산의 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해당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의 특성, 상인의 사업비 조달 능력과 시장의 소유 형태에 따라 시장 또는 시설현대화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②----- <u>법 제20조제2항</u> ----- ----- ----- ----- ----- ----- ----- ----- ----- -----.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u>법 제20조제7항</u> 에서 “대통령

⑦ (생략)

제9조의2(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① (생략)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 4. (생략)

5.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

6. (생략)

③ ~ ⑤ (생략)

<신설>

령으로 정하는 바”란 회의, 면담 또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말한다.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제9조의2(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20조의2제4항-----

6.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20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보조한 안전시설물의 관리책임자 지정 여부 및 관리

⑥·⑦ (생략)

⑧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결과
의 공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운영
하는 화재안전점검 관련 전산시
스템 및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
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
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하거나 법 제20조의2제2항
에 따라 점검을 위탁하는 경우
에는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9조의3(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
의 운영) ① 공단은 법 제24조
의2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
공제 사업(이하 “전통시장 화재
공제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한
다.

현황

2. 화재, 풍수해 등 관련 공제 또는 보험 가입 여부

⑦·⑧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⑨ 법 제20조의2제5항-----

-----.

⑩ -----
----- 제9항-----

----- 법 제20조의2제4항-----

-----.

제9조의3(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
의 운영) ① -----
----- 따른 -----
----- “화재공제사업”-----

-----.

②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제9조의8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운영계획(이하 “공제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1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제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자금의 조성계획
2.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자금의 사용계획
3. (생략)

④ ~ ⑥ (생략)

제9조의4(자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 ①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자가 내는 공제료(이하 “공제료”라 한다)
2. 전통시장 화재공제를 위한 차입금
3.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운영으

② -----
----- 따른 -----

-- 거쳐 -----

-----.

③ -----
-----.

1. 화재공제사업 -----

2. 화재공제사업 -----

3.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의4(자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 ① 화재공제 -----

-----.

1. 화재공제 -----

2. 화재공제-----

3. 화재공제-----

로 발생하는 수익금

4. 5. (생략)

② 공단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의 운영을 위한 자금을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의2 제2항에 따라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금을 공단에 지급해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공제료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현황에 관한 자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공단은 제3항에 따라 공제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공제운영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의6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자에게 공제료를 일부 면제하거나 환급해야 한다.

제9조의5(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 공단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4. 5. (현행과 같음)

② ----- 화재공제 -----

-----.

③ -----

----- 때에 공단을 통하여 지급
할 수 있다.

④ -----
----- 지급받으려면 -----

-----.

⑤ -----

----- 따른 -----

-----.

제9조의5(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 ----- 화재공제 -----

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한 자가 제9조의7에 따른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의 지급

2.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한 전통시장 및 점포의 안전시설물 점검 등 제1호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제9조의6(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 ①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전통시장에서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 및 상인조직으로 한다.

②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하려는 자는 공제운영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료를 낼 것과 제9조의7에 따른 공제금의 지급을 받을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하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공단과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일은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제가입자가 첫 회의 공제료를 낸 날로 한다.

-----.

1. 화재공제-----

--

2. 화재공제에 가입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

제9조의6(화재공제의 가입) ① 화재공제-----
-----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에서 -----
-----.

② 화재공제-----

-----.

③ 화재공제 -----

-----.

④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한
자는 공제운영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또는 일정한 기
간별로 공제료를 공단에 내야
한다.

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
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
이 높은 시장을 우대하는 등 전
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을 촉진하
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의7(공제사유 및 공제금의
지급) 공단은 전통시장 화재공
제에 가입한 전통시장 및 점포
에 화재가 발생하여 공제가입자
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가입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제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공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입자의
상속인에게 공제금을 지급한다.

제9조의8(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
위원회) ① 전통시장 화재공제
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④ 화재공제-----

---.

⑤ ----- 전통
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
경우 ----- 등 ---

---.

제9조의7(공제사유 및 공제금의
지급) ----- 화재공제에 가입
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
점가 -----
-- 화재, 붕괴, 폭발 등이 ----
--- 생명·신체나 재산상-----

-----.

-----.

제9조의8(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
위원회) ① 화재공제의 -----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
위원회(이하 “공제운영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공제운영요강 등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의 제정 및 개정

2. (생략)

3.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수입지
출 결산

4. 그 밖에 전통시장 화재공제
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 ⑤ (생략)

제9조의13(공제운영요강) ① 공단
은 공제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운영
방법·절차 및 공제계약에 필요
한 세부 사항을 공제운영요강으
로 정한다.

② (생략)

제9조의14(온누리상품권의 종류
등) ①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
른 온누리상품권의 종류 및 권
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 화재공제 운영위원회 ----

-----.

1. ----- 등 -----

2. (현행과 같음)

3. 화재공제-----

4. ----- 화재공제-----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의13(공제운영요강) ① ---
----- 거
쳐 -----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의14(온누리상품권의 종류
등) ① -----

-----.

<단서 삭제>

선불카드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권면금액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권면금액 외의 권면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2. (생략)

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5만원 또는 10만원

② (생략)

<신설>

제9조의16(등록 제한업종과 그 예외) ① (생략)

<신설>

1. 2. (현행과 같음)

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소비자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판매대행자가 운영하는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등을 통해 1회에 구매하는 금액(금액의 범위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제9조의16(등록 제한과 그 예외)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제한업종의 해당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 설>

② 법 제26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소득기준 이하의 상인”이란 별표 1의2의 업종을 영위하는 상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소득기준을 정할 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인 가구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 월별 보험료액을 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1.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

2. 매입액·매출액의 품목별 비중

3. 매장의 진열 상태

4. 점포명 또는 상호명

③ 법 제26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억원을 말한다.

④ 법 제26조의4제4항-----

-----.

⑤ ----- 제4항

려해야 한다.

<신 설>

제9조의17(가맹점의 등록갱신) 법
제26조의4제6항에 따라 가맹점
의 등록을 갱신하려는 상인 또
는 상인조직은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가맹점 등록갱신 신청서에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부장관
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⑥ 법 제26조의4제5항에 따른
매출액 및 온누리상품권 환전금
액의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출액: 「소상공인기본법 시
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매
출액

2. 온누리상품권 환전금액: 다음
각 목 중 금액이 더 큰 방법
가. 해당 점포가 수취한 온누
리상품권을 당해연도에 환
전한 금액의 합계

나. 해당 점포가 수취한 온누
리상품권을 직전연도에 환
전한 금액의 합계

제9조의17(가맹점의 등록갱신) ①
법 제26조의4제10항-----

----- 전 3개월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내에 -----

-----.

<신 설>

<신 설>

제9조의18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유효
기간 만료일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 제26조의6제4항제4호
에 따라 해당 가맹점을 말소한
다.

제9조의18(가맹점 등록 현황의 공

개)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법 제26조의4제11항에 따라 온
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현황
을 중소기업부 인터넷 홈페
이지 또는 온누리상품권 관련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
만, 중소기업부 인터넷 홈
페이지에는 온누리상품권 관련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
공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
다.

② 제1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
현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함되어야 한다.

1. 가맹점의 소재지

2. 가맹점명

3. 가맹등록 일자

4. 가맹점 등록 유형

제9조의19 (현행 제9조의18과 같
음)

제9조의19(지원 중단의 기준 등)

① (생략)

② 법 제26조의6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가맹점 등록이 최초로 취소된 경우: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개월

2. 가맹점 등록이 2회 취소된 경우: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

3. 가맹점 등록이 3회 이상 취소된 경우: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제9조의20(지원 중단의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법 제26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1년

2. 법 제26조의6제1항제2호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6개월

3. 법 제26조의6제1항제3호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법 제26조의5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6개월

나. 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가목·나목을 위반하여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3년

다. 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다목을 위반하여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6개월

제9조의20 · 제9조의21 (생략)

<신설>

라. 법 제26조의5제1항제3호
를 위반하여 가맹점 등록
이 취소된 경우: 6개월

마. 법 제26조의5제1항제4호
를 위반하여 가맹점 등록
이 취소된 경우: 5년

바. 법 제26조의5제2항을 위
반하여 가맹점 등록이 취
소된 경우: 6개월

사. 법 제26조의5제3항제1호
를 위반하여 가맹점 등록
이 취소된 경우: 1년

아. 법 제26조의5제3항제2호
를 위반하여 가맹점 등록
이 취소된 경우: 3년

자. 법 제26조의5제3항제3호
를 위반하여 가맹점 등록
이 취소된 경우: 1년

제9조의21 · 제9조의22 (현행 제9
조의20 및 제9조의21과 같음)

제9조의23(과징금의 부과) ① 법
제26조의9제1항에 따른 “부당
이득금”이란 개별가맹점이 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가목, 나목
또는 제4호 중 어느 하나를 위
반하여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위반행위를 통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한 금액의 합계에 해당 온누리상품권을 법 제26조의10에 따른 판매대행자로부터 구매한 당시에 적용된 할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른 자료 또는 조사 등을 통해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합산한다.

③ 법 제26조의9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부과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과징금 부과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따른 통지를 포함한다)하여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

<신 설>

부해야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하며, 과징금의 수납 사실을 지체 없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연기하는 경우에는 원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6회(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를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의24(판매대행자의 제출사항) ① 법 제26조의10제3항에 따라 판매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발행업무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온누리상품권의 판매량(권종별, 판매방식별 구분)
2. 온누리상품권의 재고량(권종별 구분)

<신 설>

3. 온누리상품권의 회수량(환전
량)

4. 판매대금 정산 내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발
행업무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
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온누
리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관리,
법 제26조의8에 따른 유통실태
조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발
행업무수탁기관의 장은 판매대
행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의무
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판매대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
다.

제9조의25(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
26조의12제1항에 따라 보고나
자료 제출 명령을 할 때는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기한·방법
및 내용 등을 보고자 또는 자료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
26조의12제1항에 따라 그 소속

제33조의2(권한의 위임) 중소기업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1. 2. (생략) 3.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신설> <신설> 제34조(업무의 위탁)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u>공무원 또는 공단 직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검사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대상에게 검사 시작 7일 전까지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미리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알리지 않을 수 있다.</u> 제33조의2(권한의 위임) ----- ----- ----- ----- -----. 1. 2. (현행과 같음) 3. 법 제26조의9----- 과징금----- 4. 법 제26조의12에 따른 위반행위의 조사 5. 법 제74조제1항, 제2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34조(업무의 위탁) ① ----- ----- -----
--	---

<신 설>

5. 법 제70조의2에 따른 포상금

② (생략)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 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u>별표 2</u>와 같다.	<u>의 지급</u>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 ----- <u>별표 3</u>과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연 락 처	(044) 204 - 7900